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1. 11 선고 2022가단7121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대륙아주

담당변호사 윤선웅, 조상연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별

담당변호사 임호현

변 론 종 결 2022. 12. 14.

판 결 선 고 2023. 1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식회사 B가 피고에게 한 2020. 9. 1.자 145,000,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4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

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피고는 주식회사 B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 한다)의 대표이사이다.

나. 원고는 2020. 8. 31. 이 사건 회사에게 1,037,181,67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잘못 계산하여 지급하였고, 이에 대해 이 사건 회사는 2021. 5. 21.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이 사건 회사가 분양중인 'C'의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환급금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1) 원고가 2020. 8. 31. 이 사건 회사에게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잘못 지급함에 따라 원고는 위 일자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1,037,181,67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.

2) 이 사건 회사는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, 2020. 9. 1. 피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로 145,000,000원을 지급하였는바, 이는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3)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변제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

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4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 단

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145,00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갑 제1호증의4, 제5, 10,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명의로 2020. 9. 24.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2020. 9. 1. 출금된 금액 중 145,000,000원(= 70,000,000원 + 21,000,000원 + 14,000,000원 + 40,000,000원)이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가 작성된 사실, 법인세법 제6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145,000,000원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.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을 제1, 2,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,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가 아닌 D, E였는바, 따라서 위 문서가 실제로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로써 피고가 위 돈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, ② 위 145,000,000원을 포함한 돈들은 모두 피고가 아닌, F, D, G,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,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도 그 출금내역이 피고와 무관하게 'F상환금', 'D상환금', '투자금반환'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, ③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사법(私法)상 행위가 있었음을 의제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, 위와 같은 소득처분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이 소득처분된 금액이 실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145,000,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동원